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8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20882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군수
변 론 종 결	2020. 6. 18.
판 결 선 고	2020. 8. 20.

주 문

1. 피고가 2019.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8

가. B과 C은 각 발기인이 되어 원고를 설립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B은 2018. 8. 30. 설립 중이던 원고와 사이에 B이 'D'이라는 상호로 산업처리자동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현물출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공인된 감정인인 E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위 현물출자의 이행을 감정한 결과 B의 현물출자금액은 자산총계 2,323,163,909원에서 부채총계 1,609,944,120원을 차감한 713,219,789원으로 산정되었는데, 자산 중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합계 918,117,260원이었다.

다. B은 위 현물출자금액 713,219,789원 중 3,219,789원에 대한 주식의 인수를 포기하여 원고의 주식 71,000주(1주당 액면금 10,000원)를 인수하였고, C은 원고의 주식 20,000주를 인수하고 인수가액 200,000,000원을 납입하였다.

라. 원고는 2018. 9. 12. 발행주식의 총수 91,000주, 자본금 910,000,000원으로 한 설립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설립되었다.

마. 원고는 2018. 9.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18. 9. 1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의2 제4항에 의하여 현물출자로 인한 취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19. 원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따라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아니므로 감면대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8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사. 원고는 2018. 9. 1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36,724,690원, 지방교육세 3,672,460원, 농어촌특별세 1,836,230원 합계 42,233,380원을 신고하고, 2018. 9. 27.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아. 원고는 2018. 11. 26. 피고에게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종전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자. 피고는 2019. 1.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되(제1항),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법 제32조 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관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은 법 제32조 제2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관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8

따라서, 원고의 경우처럼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출자한 금액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아닌 경우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차. 원고는 2019. 4. 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1.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9조 제5항에 의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출자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종전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의 자본금 910,000,000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713,219,789원 이상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이 정한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거부처분은 이와 달리 해석하여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법령의 해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8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되(제1항),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관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제29조 제5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관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제2호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월과세 특례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해당하는 요건 중 하나로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일 것'을 들고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의 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8

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이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 기업주와 독립된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도록 기업이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부과할 필요가 적다는 데에 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꾼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이 신설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한다. 사업양도인의 출자에 따른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그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면 신설 법인으로서는 사업양수도 대가를 지급할 재원이 부족하여 그 순자산가액의 일부가 사업양수도 대가 지급을 위해 유출될 수밖에 없어 신설 법인이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을 그대로 승계할 수 없게 되므로(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7865 판결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요건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3)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문언,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은 같은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중 순자산가액의 계산 방법인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부분만을 준용하는 것일 뿐, '소멸하는 사업장의 기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부분까지 준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8

업양수도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4) 결국,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라 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면제되기 위하여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이상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사업주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위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자본금 910,000,000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순자산가액 713,219,789원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원고가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법령 해석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8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8

별지1

부동산 목록

1. [redacted]군 F 대 874㎡

2. [redacted]군 F

1층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창고 533.47㎡

3. [redacted]군 F건물 G호

세멘부록조 스라브즙 평가건 부속사 건평 1.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8

별지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8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끝.